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1가단5301056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손태근, 홍민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석준, 김응철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김도환

변 론 종 결 2023. 5. 3.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 2. 6.부터 2021. 12.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피고 C는 2021. 11. 27.부터 2023. 6.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상호가 '주식회사 D' → '주식회사 E' → '주식회사 B'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12. 24.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6. 1. 6. 1,000만 원을, 2016. 2. 5. 2,000만 원을 각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하였다. 당시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1) 1) 피고 C의 유상증자 제안으로 피고 회사의 신주인수절차에 참여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한 것이다. 이후 피고 회사가 유상증자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유상증자 계약은 불성립 혹은 무효이다. 설사 유상증자 계약이 성립하였고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유상증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유상증자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했어야 했는데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후 유상증자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또 피고들은 원고를 아래와 같이 기망하였다. 이는 상법 제389조, 제210조, 제401조, 민법 제35조, 제750조를 위반한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C는 2016. 1. 7.경 원고가 지급한 1,000만 원이 피고 회사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위 돈은 피고 C에게 반환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2016. 2. 5.경 원고가 지급한 2,000만 원도 직원 급여 지급 명목으로 급히 사용하여야 한다고 속였으나, 직원급여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피고 C는 자신이 1,000만 원을 최초 투자한다고 하였는데 500만 원을 출자하였을 뿐이다. 피고 회사와 무관한 피고 C의 개인 인력에 급여를 지급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 피고들은 처음부터 유상증자 의사가 없었으므로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받은 것이다.

○ 피고들은 다른 투자자들이 피고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기망하였다.

나. 피고들

원고, 피고 C, 소외 F는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기술력을 해외로 수출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3,000만 원은 피고 회사의 설립초기 사무실 임대차 계약금, 인테리어 비용, 직원급여 등 운영비 명목의 돈이다. 피고 C는 원고에게 유상증자를 제안한 사실이 없고, 피고 회사는 유상증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위 돈을 수령한 후 주식회사 G 기술력 문제 및 원고 개인의 형사사건 등으로 피고 회사 업무가 중단된 것일 뿐이다.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송금행위의 경위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의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권유에 따라 장차 피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 중 일부(다만 그 주식 수는 정해지지 아니하였다)를 배정받기로 하고 피고 회사에 총 3,000만 원을 지급(이하 위 법률행위를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6. 1., 2.경 피고 C가 원고에게 위 돈이 피고 회사에 출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자본증자용임을 밝혔고, 추후 배당될 주식수는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갑 제5호증). 또 피고 C는 원고 외에 F, H, I 등 추가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갑 제5호증).

② 당시 피고 C가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맞냐?’고 물어보자, 원고가 ‘주주 참여가 맞다’고 답하였으며, 원고가 피고 C의 요청으로 2,0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입금한 직후, 피고 C가 원고에게 ‘회계 관련 건은 말일 자동보고 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 C가 운영하는 피고 회사에 투자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피고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현재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한 주식청약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한 위 돈이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된다. 원고가 2022. 4. 1.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이 2022. 4. 4.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그 무렵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므로 이와 선택적 청구 관계에 있는 피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71257 판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데, 위 돈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던 피고 C와의 협의에 따라 원고가 장차 피고 회사 주식을 인수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 회사에 먼저 지급한 것이다. 이처럼 위 돈이 정형적인 상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에 기초하여 피고 회사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상거래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민법이 정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송금행위가 있는 후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C에 대한 불법행위(상법 제389조, 제210조, 민법 제35조, 제750조) 및 채무 불이행(상법 제401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신주를 배정하거나 이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와 같은 직무를 해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상법 제389조, 제210조) 또는 채무불이행(상법 제401조)에 기한 손해배상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인 피고 C에 의하여 체결되었다.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미리 자본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 추후 피고 회사가 증자 시 일정한 수의 주식을 원고에게 배정하는 것이므로, 피고 C의 행위는 피고 회사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던 사내이사 피고 C가 원고와 직접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추후 피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 중 일부를 원고에게 배정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다.

②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된 신주발행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했는데, 현재까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신주를 원고에게 인수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③ 피고 C는,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고 원고가 운영하던 회사의 기술력 문제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렀고, 피고 회사가 정상화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신주를 발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반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2022. 2. 25.),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6. 11.경 자본금을 1억 원으로 증자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였고 또, 피고 C가 추후 피고 회사의 경영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신주인수 절차가 불가능하였다고 판단하였다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지급받은 3,0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④ 한편, 원고는 피고 C가 처음부터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원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원상회복채무 및 피고 C의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참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범위에 따라 2016. 2. 6.부터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소장부분이 송달된 2021. 12.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채무자는 그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그와 같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또 피고 C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로 채무의 이행을 구한 날2)의 다음날인 2021. 11. 27.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판사 백두선

1)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청구하고 있다(2023. 5. 3. 변론기일). 한편, 원고는 2023. 3. 13.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회사가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단기차입채권을 대위행사하겠다고 새로운 청구원인을 주장하였고, 대위행사 요건 등에 관하여 추후 변론하겠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2023. 3. 13.자 준비서면에 적힌 소송물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재판부의 석명요구(2023. 3. 15. 변론기일)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2023. 5. 2.자 준비서면에 채권자대위에 기한 청구를 청구원인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청구원인으로 삼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C의 불법행위책임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 혹은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관한 직무를 해태한 것에 기인하는데, 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피고 C의 명확한 불법행위일을 확인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 또, 피고 C의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그 지체책임이 이행청구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한다.